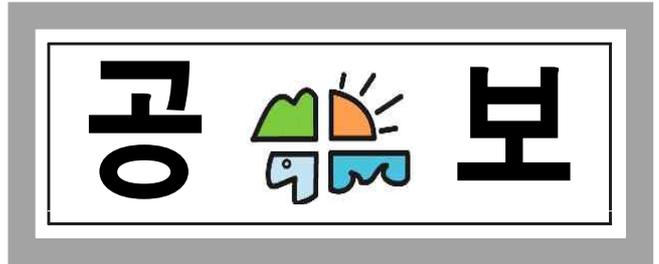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68호 2015년 12월 18일(금)

조 례

-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
-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공 고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5

회 람									
-----	--	--	--	--	--	--	--	--	--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40호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을 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건강검진비”란 태아와 임부의 건강검진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출산준비금”란 출산 준비를 위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산후조리비”란 아이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의 건강을 위해 지원 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6. “출산장려금”이란 산모를 격려하고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7. “출산 가정”이란 영아와 영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 내용) 출산 장려를 위하여 건강검진비, 출산준비금,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이하 “출산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진비와 출산준비금은 출생아마다 각각 한 차례씩 1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쌍태아 이상을 임신한 경우 건강검진비는 한차례만 지원한다.
2. 산후조리비는 출산 순위에 따라 둘째 아이 이상부터 한 차례만 1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출산 순위는 신청일 현재 출생아 기준으로 모와 부 사이에서 태어난 출산 순서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은 출산 순위에 따라 둘째 아이부터 차등 지원을 하며, 둘째 아이는 매월 10만원씩 생후 12개월까지, 셋째 이상 아이는 매월 10만원씩 생후 36개월까지 지원한다. 다만, 출산 순위는 신청일 현재 출생아 기준으로 모와 부 사이에서 태어난 출산순서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건강검진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임신 6개월부터 출산일 전일까지의 임신부에게 지원한다.

② 출산준비금은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지급한다.

③ 산후조리비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산모에게 지급한다.

④ 출산장려금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지급한다. 다만,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미만의 주민등록을 한 출산 가정이라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⑤ 입양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속초시 외 지역에서 입양한 경우만 가능하다.

제5조(지원 절차) ①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를 제출하고,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출산지원금 신청 현황(별지 제 2호 서식)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산지원금 신청 현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매월 15일까지 신청인에게 해당 지원금을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비, 출산준비금: 의료기관 임신 진료 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2. 산후조리비: 출생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예금 통장 사본 1부.
4. 신생아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각 1부.

④ 동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출산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영아 출생 신고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제6조(출산지원금 신청 시기) ① 건강검진비는 임신 6개월부터 출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산준비금은 조기 분만한 경우와 임신 9개월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비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출산장려금은 출생 신고 또는 입양 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제4조제4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 후 3개월이 지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출산지원금을 신청 중이거나 이미 지원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전한 사항이 확인되면 신청한 출산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원한 출산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공고)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확보 내용과 지원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시 누리집과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등 관리) 동장은 출산지원금 신청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시장은 출산지원금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 동장은 당월 출산지원금 신청 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 변동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산후조리비에 대한 지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뒷면)

1. 귀하가 신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① 접수(해당 동 주민센터) → ② 동 주민센터에서 시 여성가족과로 이송
→ ③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2. 구비 서류

- 가) 건강검진비와 출산준비금 신청 시: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나) 산후조리비 신청 시: 출생신고서 사본 1부
- 다) 공통 서류: 예금 통장 사본 1부

3. 안내 사항

- 가) 건강검진비와 출산지원금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 출산지원금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신청한 건을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 다)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지원한 출산준비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출산장려금 신청 대장

[동]

연 번	신청자 인적 사항						신청일	지원 기간		입금 계좌			연락처
	임 산 부 이름	주소	거주 기간	신생아 이름	신생아 생년월 일	출생 순위		시 작 월	종 료 월	은행	계 좌 번 호	예금주	

[별지 제5호 서식]

출산지원금 신청 현황

[동]

구분	출생 신고(건수)			출산지원금 신청 현황(건수)				
	계	출산지원금		계	건강검진비	출산준비금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지원제외					
월계								
누계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41호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제6호 다음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6의2. 방재단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구조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 주소 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16.

속 초 시 장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5. 12. 19. ~ 2016. 1. 2.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 : 2015. 12. 14.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장영성	
	주소 (대장상주소)	강원도 속초시 교동 780-56번지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위치	강원도 속초시 교동 780-56번지
		건축물 현황	1층 주택 33.06㎡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디자인과(☎033-639-2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